|  |  |  |
| --- | --- | --- |
|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규정(초안)》**  **의견 수렴에 대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의 규정에 의거 당 사는 원 노동 및 사회보장부에서 1999년에 반포한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 잠정방법》(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2호)을 개정하여 이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규정(초안)》을 형성하였다. 아래와 같이 공포하므로 사회 각계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고자 한다.  사회 각계에서 토론 연구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기 바라며, 2011년 12월 15일 전에 아래의 루트와 방식을 통해 제출하기 바란다.  (1) "중국정부 법제정보사이트"(http://www.chinalaw.gov.cn)에 로그인, 홈페이지 좌측의 《법규규장 초안 의견수렴시스템》을 통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  (2)전자메일: lifachu@mohrss.gov.cn  (3) 팩스: 010—84233796  (4) 우편 수신처: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법규사(주소: 北京市东城区和平里东街3号, 우편번호: 100013). 편지봉투에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규정(초안)》의견수렴"이란 문구를 명기 바람.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법규사  2011년 11월 15일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규정**  **(초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과 의거]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업무를 규율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이라 함),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사회보험료 신고, 납부기수의 확정 및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사회보험료 징수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사회보험료] 이 규정에서의 사회보험료라 함은 사용자와 그 종업원, 그리고 개인이 그 명의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가리키며, 이에는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실업보험료 및 생육보험료가 포함된다.  **제4조**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회보험료의 신고, 납부기수 확정 등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성급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바로 사회보험법에서 지칭하는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로 된다.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통일적으로 징수한다.  **제2장 사회보험료 신고**  **제5조** [신고방식] 사용자는 월별로 규정한 기한 내에 사회보험등기를 처리하는 사회보험취급기구에 가서 사회보험료 납부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사회보험취급기구에 가서 사회보험료 납부신고를 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사회보험취급기구의 동의를 얻고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우편신고는 우편물 발송지의 소인일자를 실제 신고일자로 한다.  사용자는 사회보험취급기구의 동의를 얻고 먼서 인터넷을 통해 신고한 후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요구에 따라 페이퍼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제6조** [신고내용] 사용자는 사회보험료 신고를 할 때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사회보험료 신고표를 제출하고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용자 코드, 전칭, 계좌개설은행 및 계좌번호  (2)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납부상황. 이에는 사회보험 종류, 납부기수, 비율,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3) 종업원명부 및 변경상황, 종업원별 납부기수 및 변경상황  (4)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명세상황  (5)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규정한 기타의 신고자료.  **제7조** [신고 심사]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용자의 제반 사회보험료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심사하고 신고서류가 완비하고 납부기수와 비율이 규정에 부합되고 작성한 데이터관계가 정확한 경우 이를 승인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신고서류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기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여 수정하게 한 후 다시 심사한다.  **제8조** [연기 신고] 사용자가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인해 규정한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 납부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기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적 상황이 해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사회보험취급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실을 규명한 후 이를 승인한다.  **제9조** [미신고시의 기수확정]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당월에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잠시 당해 사용자의 전달 납부금액의 110%에 따라 의무납부 금액을 산정하며, 전달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상황, 종업원 수 등 관련 상황에 근거하여 그 의무납부 금액을 산정한다. 사용자가 신고수속을 보완 처리하고 확정된 금액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규정에 따라 결제한다.  **제10조** [종업원을 위한 대리신고] 종업원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사용자가 대신 신고한다. 사용자는 종업원을 사용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사회보험취급기구에 해당 종업원의 사회보험료 납부신고를 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의 자체신고] 개인(탄력적 취업인원과 도농 거주민 포함, 하동)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등기를 처리하는 사회보험취급기구에 가서 사회보험료 납부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은 사회보험취급기구의 동의를 얻고 먼저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고 그 다음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요구에 따라 페이퍼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제3장 사회보험료 납부**  **제12조** [납부기한 및 방식] 사용자는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그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정한 3일 근무일 내에 아래의 방식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 그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  (2) 사회보험취급기구와 약정한 기타 방식.  사회보험취급기구, 사용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과 협의를 체결하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발급한 추심증빙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그가 원천징수하는 종업원의 사회보험료를 이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자의 원천징수의무] 사용자는 그 종업원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사용자가 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때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에 간여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사용자가 제때에 전액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용자에게 기한부 대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며, 아울러 사회보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체납금을 징수한다.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체납금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사용자는 월별로 원천징수 사회보험료 명세서를 종업원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기금계좌]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징수한 사회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수입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취한 기금을 정기적으로 의법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재정 특별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제15조** [납부비용의 기장]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용자의 실제 납부액(사용자가 종업원을 위한 원천징수부분 포함)과 원천징수명세서에 근거하여, 아울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징수한 사회보험료를 기장한다.  (1) 사용자가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당해 단위의 제반 사회보험료 의무납부액 비율에 따라 각각 기본양로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 및 생육보험기금에 계상한다.  (2) 종업원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각각 각종 기금과 상응하는 개인계좌에 계상한다.  **제16조** [납부기록]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용자와 종업원의 사회보험료 납부기록을 설치하여 적어도 매년 한번은 비용납부상황을 사용자와 종업원에게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사회보험료 납부기록의 안전한 비밀유지와 양호한 보존을 책임져야 한다.  사용자와 종업원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자의 납부상황 통보] 사용자는 해마다 본 단위의 연간 사회보험료 납부상황을 본 단위 종업원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또는 본 단위의 뚜렷한 위치에 공포하여 종업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징수상황 공고]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적어도 매년 한번은 사회에 사회보험료 징수상황을 공포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개인의 자체납부] 개인 명의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현지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과 위탁 수금협의를 체결하여 개인의 위탁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리 징수할 수 있으며,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은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발급한 추심증빙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의무납부 사회보험료를 이체할 수 있다.  개인의 납부액이 부족한 경우 그가 위탁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은 대리 징수할 때 지체 없이 일깨워주어야 하며,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4장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처리**  **제20조** [납부 명령] 사용자가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체납일로부터 10일 내에 《사회보험료 기한부 보완납부 최고서》를 발송하여 15일 내에 납부하거나 보완 납부하도록 명령하며, 그가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법 제63조,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신청하여 체납금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키고 체납 사회보험료를 직접 이체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1) 제때에 신고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  (2) 신고 후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종업원 수 또는 납부기수를 기만, 누락하여 사회보험료를 적게 납부한 경우.  동시에 《사회보험료 기한부 보완납부 최고서》는 사용자에게 전 항의 규정 기한 내에 사회보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제21조** [계좌 조회] 이 규정 제20조에 따라 기한부 보완납부를 명령하고 최고한 후 사용자가 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보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법에 따라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단위계좌 조회 협조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예금계좌를 조회해야 한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조회결과를 사회보험취급기구에 피드백해야 한다.  **제22조** [이체 결정]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조회 상황에 근거하여 《체납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서》를 작성하여 관할 사회보험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체납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사용자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2) 이체 이유와 의거  (3) 이체할 사회보험료 액수, 방식 및 일자  (4) 행정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루트와 기한  (5) 행정기관의 명칭, 직인 및 일자.  **제23조** [이체 통지]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이체 결정을 내린 후 2일 근무일 내에 사용자의 계좌개설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사회보험료 이체통지서》를 발송하고 동시에 《체납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서》를 첨부한다. 《체납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서》는 동시에 사용자에게 송달한다.  **제24조** [체납금의 집행] 사용자가 기한이 지나도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그와 연기납부협의를 체결하고 체납금 납부방법을 약정할 수 있다.  **제25조** [연기납부협의 체결] 이 규정 제23조에 따라 이체한 후 사용자의 계좌 잔액이 납부할 사회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회보험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담보제공과 연기납부협의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  사용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그와 연기납부협의를 체결하지 못한다.  **제26조** [협의내용] 사회보험취급기구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연기납부협의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쌍방 당사자의 기본정보  (2) 연기기한과 유예납부 사회보험료 및 체납금의 금액  (3) 담보방식, 담보재산 및 그 평가보고서  (4) 담보재산으로 사회보험료를 충당하는 처분방식  (5) 사회보험료 안정적인 징수에 유리한 기타 방식.  **제27조** [연기 납부기한] 사회보험취급기구가 담보제공 사용자와 연기납부협의를 체결하는 경우 그 기한은 일반적으로 3개월이며,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연기납부협의를 체결하는 경우라도 그 종업원의 유예 납부기간의 사회보험혜택 적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제28조** [담보방식]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용자에게 저당, 질권 방식으로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합법적인 재산으로 체납 사회보험료에 담보를 제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용자가 담보를 제공한 재산을 심사하여 법률 규정에 부합되고 권리상의 하자가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담보재산 가치가 체납한 사회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9조** [담보재산의 처분] 사회보험취급기구와 사용자는 연기납부협의에 연기납부협의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자가 체납한 사회보험료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 저당, 질권 재산을 가치 평가하거나 경매,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금으로 사회보험료를 우선 충당함을 약정해야 한다.  **제30조** [강제집행 신청조건과 기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법에 따라 소재지의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그 재산을 압류, 차압, 경매하여 경매소득으로 사회보험료와 체납금을 변제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이체한 후 사용자가 여전히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못하고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연기납부협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담보를 제공한 재산가치가 변경되어 사회보험료와 체납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제31조** [강제집행 신청서류] 사회보험취급기구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강제집행 신청서  (2) 사회보험행정부서의 이체결정서 및 결정을 내리게 된 사실과 이유, 의거  (3)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최고 상황  (4) 사용자가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  (5) 강제집행 신청대상 재산의 상황  (6)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했거나 인민법원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사회보험취급기구 책임자가 서명하고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직인을 날인하는 동시에 일자를 명기해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2조** [사회보험취급기구의 법적책임] 사회보험취급기구 및 그 업무직원이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을 법에 따라 처분하며, 사회보험기금, 사용자 또는 개인에게 손실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비용 사회보험료 납부상황을 사용자와 종업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2) 사회보험료 납부기록의 누설이나 하자를 초래한 경우  (3) 사회보험료를 과소, 과다 징수한 경우  (4)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납부기수를 낮게 책정한 경우  (5)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33조** [미신고시의 법적책임]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의무납부 사회보험료 액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사회보험료 징수납부 잠정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제34조** [임금총액 또는 종업원 수 거짓보고 법적책임] 사용자가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의무납부 사회보험료를 신고할 때 임금총액 또는 종업원 수를 거짓 보고한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노동보장 감찰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거짓보고 임금총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제35조**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법적책임]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아 사회보험취급기구로부터 기한부 납부 명령을 받은 후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거나 보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사회보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제6장 부 칙**  **제36조** [취급 및 징수기구의 정보소통] 세무기관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지체 없이 사용자와 종업원의 의무납부 사회보험료 액수를 세무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세무기관은 지체 없이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사용자와 종업원의 납부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37조** [통일 서식] 이 규정 중 관련 문서의 서식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38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2년 \_\_\_\_월 \_\_\_\_일로부터 시행한다.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 잠정방법》(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2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첨부 1: 사회보험료 기한부 보완납부 최고서  첨부 2: 단위계좌 조회 협조통지서  첨부 3: 체납 사회보험료 이체통지서  첨부 4: 체납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서  첨부 1:  번호:  **사회보험료 기한부 보완납부 최고서**  **(보관용)**  송달단위:  송달주소:  우편번호:  송달방식: 직송 우편 송달일자: \_\_\_\_\_\_년 \_\_\_\_월 \_\_\_\_일  송달단위 수신자: 담당자:  ---------------------------------------------  번호:  **사회보험료 기한부 보완납부 최고서**  \_\_\_\_\_\_\_\_\_\_\_\_\_\_:  귀 단위에서 \_\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 사회보험료 \_\_\_\_\_위안을 체납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귀 단위에서 \_\_\_\_\_년 \_\_\_\_월 \_\_\_\_일 전에 사회보험료 \_\_\_\_위안과 체납금 \_\_\_\_위안(납부기준은 체납일로부터 일당 0.5‰를 추가 수취)을 \_\_\_\_\_\_\_\_\_(방식)에 납부할 것을 명령한다.  법정이유가 없이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 기구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신청하여 사회보험료를 직접 이체하도록 하거나 인민법원에 체납금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본 기구에 와서 의견을 진술하고 이유를 설명하기 바란다. 기한이 지나도 의견진술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회보험취급기구 직인)  \_\_\_\_\_\_년 \_\_\_\_월 \_\_\_\_일  첨부 2:  번호:  **단위계좌 조회 협조통지서(보관용)**  송달단위:  송달주소:  우편번호:  송달방식: 직송 우편 송달일자: \_\_\_\_\_\_년 \_\_\_\_월 \_\_\_\_일  송달단위 수신자: 담당자:  ---------------------------------------------  번호:  **단위계좌 조회 협조통지서**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사용자）가 \_\_\_\_\_년 \_\_\_\_월까지 \_\_\_\_위안의 사회보험료를 체납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단위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상황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이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_\_\_\_\_\_년 \_\_\_\_월 \_\_\_\_일 전에 서면으로 계좌개설은행, 계좌개설명칭, 은행계좌 번호, 해당 계좌의 예금잔액 등 계좌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  연락인:  연락전화:  통신주소:  우편번호:  (사회보험취급기구 직인)  \_\_\_\_\_\_년 \_\_\_\_월 \_\_\_\_일  첨부 3:  **체납 사회보험료 이체통지서(보관용)**  송달단위:  송달주소:  우편번호:  송달방식: 직송 우편 송달일자: \_\_\_\_\_\_년 \_\_\_\_월 \_\_\_\_일  송달단위 수신자: 담당자:  ---------------------------------------------  번호:  **체납 사회보험료 이체통지서**  \_\_\_\_\_\_\_\_\_\_\_\_\_\_: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63조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체납한 사회보험료(《체납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서》(번호:\_\_\_\_\_\_))를 이체하기로 결정한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체납한 사회보험료 총 \_\_\_\_위안(중문 대문자)을 이체하기 바란다. 이체계좌, 수금계좌 정보는 아래와 같다.  이체계좌:  수금계좌:  ①계좌개설은행:  계좌개설은행:  계좌명칭:  계좌명칭:  은행계좌 번호:  은행계좌 번호:  ②계좌개설은행:  계좌명칭:  은행계좌 번호:  (사회보험행정부서 직인)  \_\_\_\_\_\_년 \_\_\_\_월 \_\_\_\_일  첨부 4:  **체납 사회보험료 이체결정서(보관용)**  송달단위:  송달지점:  우편번호:  송달방식: 직송 우편 송달일자: \_\_\_\_\_\_년 \_\_\_\_월 \_\_\_\_일  송달단위 수신자: 담당자:  ---------------------------------------------  번호:  **체납 사회보험료 이체 결정서**  \_\_\_\_\_\_\_\_\_\_\_\_\_\_: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6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귀 단위에서 체납한 사회보험료 총 \_\_\_\_\_위안(중문 대문자)을 이체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_\_\_\_\_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보험행정부서 직인)  \_\_\_\_\_\_년 \_\_\_\_월 \_\_\_\_일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이라 함)을 공포한 후 당 사에서는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 노동보장부에서 1999년에 반포한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 잠정방법》(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2호)(이하 기존방법이라 함)에 대해 수정하여 지금의 《사회보험료 신고 및 납부 관리규정(초안)》(이하 초안이라 함)을 형성하였다. 초안은 총 6장 38조로서,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적용범위 관련  첫째, 관리단계에서 기존방법이 규정한 사회보험료 납부신고와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사회보험료 징수를 토대로 하여 사회보험료 납부기수의 책정단계(제2조)를 추가하였다.  둘째, 징수 보험종류에서 기존방법이 규정한 양로, 의료 및 실업 3가지 보험을 모든 5가지 사회보험(제3조)에로 확대시켰다.  셋째, 사회보험 가입주체에서 기존방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와 종업원이 포함될 뿐 아니라 제도의 발전에 비추어 개인 명의로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가입제도와 도농 거주민의 양로,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는 개인을 이 규정(제3조, 제11조, 제19조)에 포함시켰다.  (2)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직책 관련  당면하게 각 지역의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징수하기도 하고 세무기관에서 징수하기도 한다. 초안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징수하거나 혹은 세무기관에서 징수하거나를 불문하고 사회보험료 납부신고와 기수 확정은 모두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책임지고 처리(제4조 제1항)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의 규정에 의거 성급 인민정부에서 사회보험취급기구를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으로 결정하였다면 바로 사회보험법에서 규정한 사회보험료 징수기구로 되며,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집행(제4조 제2항)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밖에 사회보험법의 요구에 근거하여 초안은 사회보험취급기구 징수지역의 5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에 대해 방향성 규정(제4조 제3항)을 지었으며, 동시에 기존방법 제21조 실업보험취급기구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통합 징수의 의지를 구현하였다.  (3) 사회보험료 신고 관련  첫째, 신고기한을 수정하였다. 기존방법에서 사용자가 매월 5일 전에 신고하는 것을 달마다 규정한 기한 내에 사회보험등기를 처리하는 사회보험취급기구에 가서 납부신고(제5조)를 하도록 수정하였다. 이렇게 처리하면 각 지역에서 월별로 신고하는 원칙하에서 구체적 신고시간을 융통성 있게 장악하는 데 유리하다.  둘째, 신고방식과 심사요구 등을 완벽히 하였다. 실제 상황에 비추어 인터넷 신고방식(제5조 제2항)을 증가하고 사용자의 신고서류(제6조)를 세부화 하였으며,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지체 없이 심사하도록 요구하고 기존방법 중 바로 심사 불가능한 관련 내용(제7조)을 삭제하였다. 이 밖에 사용자가 종업원을 대신하여 신고하는 의무(제10조)를 증가하였다.  셋째, 개인의 신고내용을 증가하였다. 개인 명의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신고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 신고(제11조)할 수 있다.  (4) 사회보험료 납부 관련  첫째, 사회보험료 납부방식을 완벽히 하였다. 기존방법에서 수표 또는 현금 형식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삭제하고 사용자의 계좌개설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거나, 또는 사회보험취급기구와 약정한 기타 방식(제12조)으로 납부하도록 수정하였다.  둘째, 기금관리를 완벽히 하였다. 기존방법 중 관련 사회보험료는 국유 시중은행에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수입계좌에, 기금은 재정부서가 국유 시중은행에 개설한 사회보장기금 재정 특별계좌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각각 사회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수입계좌에, 기금은 의법 개설한 사회보험기금 재정 특별계좌에 예치하도록 수정하고 국유 시중은행의 제한성 규정(제14조)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았다.  셋째, 개인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증가하였다. 개인 명의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현지 사회보험취급기구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 납부수속을 하거나 또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의뢰하여 대리 공제하게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사회보험취급기구의 사회보험료 이체 및 고지의무(제19조)를 규정하였다.  (5)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강제조치  사회보험법 제63조와 제86조에 근거하여 초안은 사용자가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강제조치를 규정하였다.  첫째,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사용자가 체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기한부 보완납부 최고서를 발송하여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 및 체납금 납부의무와 관련 법률결과(제20조)를 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둘째, 사용자가 기한이 지나도 사회보험료를 보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법에 따라 그 예금계좌(제21조)를 조회해야 하며, 조회상황에 근거하여 관할 사회보험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이체 결정(제22조)을 내리게 하고 계좌개설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사회보험료를 이체하게 해야 하며, 동시에 이체결정서를 사용자(제23조)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사용자의 계좌잔액이 납부할 사회보험료 액수보다 적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당해 사용자에게 저당, 질권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최장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연기납부협의를 체결한 후 그 담보재산으로 사회보험료를 충당하는 처분방식(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을 규정하였다.  넷째,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고 또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담보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구는 인민법원에 그 재산의 압류, 차압,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소득으로 사회보험료(제30조, 제31조)를 충당하도록 규정하였다.  (6) 법적책임 관련  초안은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 잠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적책임 내용을 증가하고 사회보험취급기구 및 그 업무직원의 실직, 독직 법적책임(제32조),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신고를 하지 않는 법적책임(제33조), 임금총액 또는 종업원 수를 거짓 보고한 법적책임(제34조), 그리고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은 법적책임(제35조)을 명확히 하였다.  이 밖에 초안은 관련 법률문서를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이 규정의 첨부문건으로 함으로써 통일성과 시행가능성을 증가하였다. |  |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关于《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规定**  **(草案)》公开征求意见的通知**  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和《社会保险费征缴暂行条例》的规定，我们对原劳动和社会保障部1999年发布的《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暂行办法》（劳动和社会保障部令第2号）进行了修改，形成了目前的《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规定（草案）》。现予公布，征求社会各界的意见和建议。  欢迎社会各界积极参与讨论研究，提出意见和建议，于2011年12月15日前通过以下途径和方式提出意见：  （一）登陆“中国政府法制信息网”，网址：http://www.chinalaw.gov.cn，在网站首页左侧的《法规规章草案意见征集系统》中对草案提出意见。  （二）电子邮件：lifachu@mohrss.gov.cn  （三）传真：010—84233796  （四）信函邮寄至：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法规司（地址：北京市东城区和平里东街3号，邮编：100013），并请在信封上注明“《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规定（草案）》征求意见”字样。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法规司 二O一一年十一月十五日      **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规定**  **（草案）**  **第一章 总 则**  **第一条** [目的和依据] 为规范社会保险费的申报和缴纳管理工作，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以下简称社会保险法）、《社会保险费征缴暂行条例》，制定本规定。  **第二条** [适用范围] 社会保险缴费申报、基数核定和社会保险经办机构征收社会保险费，适用本规定。  **第三条** [社会保险费] 本规定所称社会保险费，是指由用人单位及其职工和以个人身份参加社会保险并缴纳的社会保险费，包括基本养老保险费、基本医疗保险费、工伤保险费、失业保险费和生育保险费。  **第四条** [统一征收社会保险费] 社会保险经办机构负责社会保险缴费申报、基数核定等工作。  社会保险经办机构根据社会保险法和《社会保险费征缴暂行条例》的相关规定，按照省级人民政府决定征收社会保险费的，即为社会保险法所称社会保险费征收机构。  社会保险经办机构征收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费实行统一征收。  **第二章 社会保险费申报**  **第五条** [申报方式] 用人单位应当按月在规定期限内到办理社会保险登记的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缴费申报。用人单位到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社会保险缴费申报有困难的，经社会保险经办机构同意，可以邮寄申报。邮寄申报以寄出地的邮戳日期为实际申报日期。  经社会保险经办机构同意，用人单位也可以先通过网上申报，并按照社会保险经办机构的要求提供纸质材料。  **第六条** [申报内容] 用人单位进行缴费申报时，应当向社会保险经办机构报送社会保险费申报表，提供下列信息：  （一）用人单位代码、全称、开户银行及账号；  （二）用人单位缴费情况，包括：缴费险种、缴费基数、费率、缴费金额和缴费期限等；  （三）职工名册及变化情况、每名职工缴费基数及变化情况；  （四）为职工代扣代缴明细情况；  （五）社会保险经办机构规定的其他申报材料。  **第七条** [申报审核]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对用人单位参加各项社会保险的缴费申报材料进行即时审核，对申报材料齐全、缴费基数和费率符合规定、填报数量关系准确的，予以核准；对不符合规定的申报材料提出改正意见，退用人单位修正后再次审核。  **第八条** [延期申报] 用人单位因不可抗力因素，不能按期办理社会保险缴费申报的，可以延期申报。但应当在不可抗力情形消除后立即向社会保险经办机构报告。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查明事实，予以核准。  **第九条** [未申报基数核定] 用人单位未按规定申报本月应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暂按该单位上月缴费数额的110%确定应缴数额；没有上月缴费数额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按照该单位的经营状况、职工人数等有关情况确定应缴数额。用人单位补办申报手续并按核定数额缴纳社会保险费后，由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规定结算。  **第十条** [代职工申报] 职工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由用人单位代为申报。用人单位应当自用工之日起30日内为其职工向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缴费申报。  **第十一条** [个人申报] 以个人身份（包括灵活就业人员和城乡居民，下同）参加社会保险的，应当到办理社会保险登记的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缴费申报。  经社会保险经办机构同意，个人也可以先通过网上申报，并按照社会保险经办机构的要求提供纸质材料。  **第三章 社会保险费缴纳**  **第十二条** [缴纳期限和方式] 用人单位应当在社会保险经办机构核定其缴费后的3个工作日内采取下列方式之一缴纳社会保险费：  （一）到其开户银行或其他金融机构缴纳；  （二）与社会保险经办机构约定的其他方式。  社会保险经办机构、用人单位可以与银行或其他金融机构签订协议，委托银行或其他金融机构根据社会保险经办机构开出的托收凭证划缴用人单位及为其职工代扣代缴的社会保险费。  **第十三条** [单位代缴义务] 用人单位应对其职工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严格履行代扣代缴义务。用人单位依法履行代扣代缴义务时，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干预或拒绝。  用人单位未按时足额代扣代缴的，由社会保险经办机构责令用人单位限期代缴，并按照社会保险法第八十六条的规定向用人单位收取滞纳金。用人单位不得要求职工承担滞纳金。  用人单位应当按月将代扣代缴社会保险费的明细情况告知职工本人。  **第十四条** [基金账户] 征收的社会保险费，应当存入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规定开设的社会保险基金收入户。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按照有关规定定期将收到的基金存入依法开设的社会保险基金财政专户。  **第十五条** [缴费记账] 社会保险经办机构对已征收的社会保险费，根据用人单位实际缴纳额（包括用人单位为其职工代扣代缴额）和代扣代缴明细表，按照有关规定进行记账：  （一）用人单位缴纳的社会保险费按照该单位各项社会保险费应缴额的份额分别计入基本养老保险基金、基本医疗保险基金、工伤保险基金、失业保险基金和生育保险基金；  （二）职工缴纳的基本养老保险费、基本医疗保险费和失业保险费，按规定分别计入各项基金和相应的个人账户。  **第十六条** [缴费记录]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为用人单位和职工建立缴费记录，每年至少一次将缴费情况告知用人单位和职工，并负责缴费记录的安全保密和保存完整。  用人单位和职工有权按照规定查询缴费记录。  **第十七条** [单位缴费情况通报] 用人单位应当每年向本单位职工代表大会通报或在本单位住所的显著位置公布本单位全年社会保险费缴纳情况，接受职工监督。  **第十八条** [征收情况公告]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至少每年一次向社会公布社会保险费征收情况，接受社会监督。  **第十九条** [个人缴纳] 以个人身份参加社会保险的，应在当地社会保险经办机构规定的期限内及时办理缴费。  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与银行或其他金融机构签订委托收款协议，在个人委托银行或其他金融机构代扣时，银行或其他金融机构根据社会保险经办机构开出的托收凭证划缴参保个人应缴纳的社会保险费。  个人缴费余额不足的，其委托银行或其他金融机构代扣时应当及时提醒；未按时足额缴费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告知本人。  **第四章 未按时足额缴费的**  **处理**  **第二十条** [责令缴纳]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于欠缴之日起10日内发出《社会保险费限期补缴催告书》，责令其在15日内缴纳或者补足，并告知其逾期未缴纳的，将按照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第八十六条的规定，提请社会保险行政门处欠缴数额1倍以上3倍以下的罚款、直接划拨欠缴的社会保险费：  （一）未按时申报且未缴费的；  （二）申报后未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的；  （三）因瞒报、漏报职工人数或缴费基数而少缴社会保险费的。  《社会保险费限期补缴催告书》同时告知用人单位应当在前款规定期限内，依照社会保险法第八十六条规定缴纳滞纳金；逾期未缴纳的，社会保险经办机构将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二十一条** [查询账户] 按照本规定第二十条责令限期补缴和催告后，用人单位逾期仍未缴纳或者补足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依法向银行和其他金融机构发出《协助查询单位账户通知书》，查询其存款账户。银行和其他金融机构应当及时将查询结果反馈给社会保险经办机构。  **第二十二条** [划拨决定]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根据查询情况，制作《划拨欠缴社会保险费决定书》，报所属的社会保险行政部门批准。《划拨欠缴社会保险费决定书》应当载明下列事项：  （一）用人单位名称、地址、法定代表人；  （二）划拨的理由和依据；  （三）划拨的社会保险费数额、方式和时间；  （四）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五）行政机关的名称、印章和日期。  **第二十三条** [划拨通知]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在社会保险行政部门作出划拨决定后2个工作日内，向用人单位开户银行或者金融机构送达《划拨社会保险费通知书》，并附《划拨欠缴社会保险费决定书》，同时将《划拨欠缴社会保险费决定书》送达用人单位。  **第二十四条** [滞纳金执行] 用人单位逾期未缴纳的滞纳金，由社会保险经办机构依法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用人单位按照本规定提供担保的，社会保险经办机构也可以与其通过签订延期缴费协议约定滞纳金偿还办法。  **第二十五条** [签订延期缴费协议] 按照本规定第二十三条划拨后，用人单位账户余额少于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根据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第二款的规定，要求该用人单位提供担保，签订延期缴费协议。  用人单位未提供担保的，社会保险经办机构不得与其签订延期缴费协议。  **第二十六条** [协议内容] 社会保险经办机构与用人单位签订的延期缴费协议，应当包括下列内容：  （一）双方当事人基本信息；  （二）延期的期限和缓缴社会保险费及滞纳金的金额；  （三）担保方式、担保财产及其评估报告；  （四）担保财产抵缴社会保险费的处置方式；  （五）其他有利于社会保险费安全征收的事项。  **第二十七条** [延期缴费期限] 社会保险经办机构与提供担保的用人单位签订延期缴费协议的，延期缴费期限一般为3个月，最长不得超过6个月。  用人单位提供担保并签订延期缴费协议的，不影响其职工在缓缴期间的社会保险待遇。  **第二十八条** [担保方式]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要求用人单位以抵押、质押的方式，将其所拥有的合法财产作为所欠缴的社会保险费提供担保。  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对用人单位提供担保的财产进行审核，确认其符合法律规定且没有权利瑕疵，并对担保财产的价值依法进行评估，使担保财产价值能够抵缴欠缴的社会保险费。  **第二十九条** [担保财产的处置] 社会保险经办机构与用人单位应当在延期缴费协议中约定，在延期缴费协议期满后，用人单位未能清偿所欠缴的社会保险费的，应当以抵押、质押财产折价或者以拍卖、变卖所得的价款优先抵缴社会保险费。  **第三十条** [申请强制执行的条件和期限] 有下列情形之一的，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依法向所在地有管辖权的人民法院申请扣押、查封、拍卖其财产，以拍卖所得抵缴社会保险费和滞纳金：  （一）经按第二十三条规定划拨后，用人单位仍未能足额缴纳社会保险费且不提供担保的；  （二）延期缴费协议期满、但用人单位提供担保的财产因价值发生变化未能足额清偿社会保险费和滞纳金的。  **第三十一条** [申请强制执行材料] 社会保险经办机构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的，应当提供下列材料：  （一）强制执行申请书；  （二）社会保险行政部门的划拨决定书及作出决定的事实、理由和依据；  （三）社会保险经办机构催告情况；  （四）用人单位逾期未履行的情况；  （五）申请强制执行的财产情况；  （六）法律、行政法规规定和人民法院要求的其他材料。  强制执行申请书应当由社会保险经办机构负责人签名，加盖社会保险经办机构的印章，并注明日期。  **第五章 法律责任**  **第三十二条** [社会保险经办机构法律责任] 社会保险经办机构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并对直接负责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给社会保险基金、用人单位或者个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一）未按照规定将缴费情况告知用人单位和职工的；（二）造成缴费记录泄密或者缺失的；  （三）少征或者多征社会保险费的；  （四）故意少核定用人单位缴费基数的；  （五）法律、法规规定的其他情形。  **第三十三条** [未申报的法律责任] 用人单位未按照规定申报应缴纳的社会保险费数额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限期改正，并按照《社会保险费征缴暂行条例》第二十三条规定，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000元以上10000元以下的罚款。  **第三十四条** [瞒报工资总额或者职工人数的法律责任] 用人单位向社会保险经办机构申报应缴纳的社会保险费时，瞒报工资总额或者职工人数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并按照《劳动保障监察条例》第二十七条的规定，处瞒报工资总额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第三十五条** [未按时足额缴费法律责任] 用人单位未按时足额缴纳社会保险费,经社会保险经办机构责令限期缴纳后，逾期仍不缴纳或者补足的，由社会保险行政部门按照社会保险法第八十六条的规定，处欠缴数额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第六章 附 则**  **第三十六条** [经办和征收机构信息沟通] 社会保险费由税务机关征收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及时把用人单位和职工应缴社会保险费数额提供给税务机关；税务机关应当及时向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用人单位和职工的缴费情况。  **第三十七条** [统一表单] 本规定中有关文书样式，由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统一制定。  **第三十八条** [施行日期] 本规定自2012年\_\_\_\_\_月\_\_\_\_\_日起施行。劳动和社会保障部《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暂行办法》（劳动和社会保障部令第2号）同时废止。    附件1：社会保险费限期补缴催告书  附件2：协助查询单位账户通知书  附件3：划拨欠缴社会保险费通知书  附件4：划拨欠缴社会保险费决定书  附件1：  编号：  **社会保险费限期补缴催告书**  **（存根）**  送达单位：  送达地点： 邮政编码：  送达方式： 直送 邮寄 送达时间：\_\_\_\_\_\_\_年\_\_\_\_\_月\_\_\_\_\_日  送达单位收件人 经办人：  ------------------------------------------------------------------  编号：  **社会保险费限期补缴催告书**  \_\_\_\_\_\_\_\_\_\_\_\_\_\_:  你单位截至\_\_\_\_\_\_\_\_\_年\_\_\_\_\_月\_\_\_\_\_日欠缴社会保险费\_\_\_\_\_\_\_\_元，违反了《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的规定。现依法责令你单位于\_\_\_\_\_\_\_\_\_年\_\_\_\_\_月\_\_\_\_\_日前限期补缴社会保险费\_\_\_\_\_\_\_元和滞纳金\_\_\_\_\_\_\_元（缴纳标准为自欠缴之日起按日加收万分之五），上缴至：（方式） 。  无法定理由逾期未缴纳的，我们将依法申请社会保险行政部门作出直接划拨欠缴的社会保险费的决定、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所欠的滞纳金。社会保险行政部门将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第八十六条规定处欠缴数额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如有异议，请于收到本催告书3日内来我单位进行陈述和申辩。逾期不陈述、申辩的视为放弃陈述、申辩权利。  （社会保险经办机构公章） 年 月 日    附件2：  编号：  **协助查询单位账户通知书（存 根）**  送达单位：  送达地点：  邮政编码：  送达方式： 直送 邮寄 送达时间：\_\_\_\_\_\_\_年\_\_\_\_\_月\_\_\_\_\_日  送达单位收件人 经办人：  ----------------- ------------------------------------------------  编号：  **协助查询单位账户通知书**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用人单位）在缴纳社会保险费过程中，截至\_\_\_\_\_\_年\_\_\_\_月，欠缴社会保险费\_\_\_\_\_\_\_\_元 。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规定，请协助查询该单位开立的存款账户情况，并于\_\_\_\_\_\_\_\_年\_\_\_\_月\_\_\_\_日前书面提供开户银行、开户名称、银行账号、对应账户存款余额等账户信息。  联系人：  联系电话：  通讯地址：  邮政编码：  （社会保险经办机构公章）  \_\_\_\_\_\_\_\_\_年\_\_\_\_\_月\_\_\_\_\_日    附件3：  **划拨欠缴社会保险费通知书（存 根）**  送达单位：  送达地点：  邮政编码：  送达方式： 直送 邮寄 送达时间：\_\_\_\_\_\_\_年\_\_\_\_\_月\_\_\_\_\_日  送达单位收件人 经办人：.  ------------------------------------------------------------------  编号：  **划拨欠缴社会保险费通知书**  \_\_\_\_\_\_\_\_\_\_\_\_\_\_:  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规定，社会保险行政部门决定划拨 欠缴社会保险费（《划拨欠缴社会保险费决定书》(编号\_\_\_\_\_\_\_\_\_)）。请于收到本通知后立即划拨所欠社会保险费计\_\_\_\_\_\_\_\_ 元（大写）。划拨账户、接收账户信息如下：  划拨账户：  接收账户：  ①开户银行：  开户银行：  开户名称：  开户名称：  银行账号：  银行账号：  ②开户银行：  开户名称：  银行账号：  （社会保险行政部门公章）  \_\_\_\_\_\_\_\_\_年\_\_\_\_\_月\_\_\_\_\_日  附件4：  **划拨欠缴社会保险费决定书（存 根）**  送达单位：  送达地点：  邮政编码：  送达方式： 直送 邮寄 送达时间：\_\_\_\_\_\_\_\_\_年\_\_\_\_\_月\_\_\_\_\_日  送达单位收件人 经办人：.  ------------------------------------------------------------------  编号：  **划拨欠缴社会保险费决定书**  \_\_\_\_\_\_\_\_\_\_\_\_\_\_:  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规定，现决定划拨你单位欠缴社会保险费计\_\_\_\_\_\_\_\_元（大写）。  如对本决定不服，可以于收到本决定书之日起六十日内向\_\_\_\_\_\_\_\_申请行政复议，或者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社会保险行政部门公章）  \_\_\_\_\_\_\_\_\_年\_\_\_\_\_月\_\_\_\_\_日    **关于《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规定（草案）》的说明**    《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以下简称社会保险法）公布后，我们根据社会保险法的规定，对原劳动保障部1999年发布的《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暂行办法》（劳动和社会保障部令第2号）（以下简称原办法）进行了修改，形成了目前的《社会保险费申报缴纳管理规定（草案）》（以下简称草案》。草案共6章38条，现将有关内容说明如下：  （一）关于适用范围  一是在管理环节上，在原办法规定的社会保险费缴费申报和社会保险经办机构征收社会保险费的基础上，增加了社会保险费基数核定环节（第二条）；  二是在征收险种上，将原办法规定的养老、医疗和失业三项保险，扩大为全部五项社会保险（第三条）；  三是在参保主体上，不仅包括了原办法规定的用人单位及其职工，还根据制度发展，将以个人身份参加职工基本养老保险、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以及城乡居民养老、医疗保险制度的个人纳入本规定（第三条、第十一条、第十九条）。  （二）关于社保经办机构职责  目前，各地社会保险费有由社会保险经办机构征收的，也有由税务机关征收的。草案根据社会保险法的规定，明确不论社保征收还是税务征收的地区，社会保险缴费的申报和基数核定都应当由社会保险经办机构负责（第四条第一款）；同时明确，社会保险经办机构根据《社会保险费征缴暂行条例》规定、经省级人民政府决定其征收社会保险费的，即为社会保险法规定的社会保险费征收机构，按照本规定执行（第四条第二款）。  另外，根据社会保险法要求，草案对社会保险经办机构征收的地区，社会保险费实行五险统一征收作了方向性规定（第四条第三款）；同时删去原办法第二十一条有关失业保险经办机构的内容，以体现统一征收的要求。  （三）关于社会保险费申报  一是修改申报时限。将原办法规定的用人单位在每月5日前申报的时限，修改为按月在规定期限内到办理社会保险登记的社会保险经办机构办理缴费申报（第五条），有利于各地在按月申报的原则下，灵活掌握具体申报时间；  二是完善申报方式及审核要求等。根据实践情况，增加了网上申报方式（第五条第二款）；细化了用人单位申报材料（第六条）；要求社保经办机构即时审核，删去原办法有关不能即时审核的内容（第七条）；增加了用人单位代职工申报的义务（第十条）；  三是增加个人申报内容。规定以个人身份参加社会保险的，应当办理缴费申报，并可以通过网上申报（第十一条）。  （四）关于社会保险费缴纳  一是完善缴费方式。删去原办法规定的以支票或者现金形式缴纳社会保险费的方式，修改为到用人单位开户银行或者其他金融机构缴纳，或者与社保经办机构约定的其他方式缴纳（第十二条）；  二是完善基金管理。将原办法中有关社会保险费应当进入在国有商业银行开设的社会保险基金收入户、基金应当存入财政部门在国有商业银行开设的社会保障基金财政专户的内容，分别修改为社会保险费应当进入按照规定开设的社会保险基金收入户、基金存入依法开设的社会保险基金财政专户，不再强调国有商业银行的限制性规定（第十四条）；  三是增加个人缴费。以个人身份参加社会保险的，应在当地社会保险经办机构规定的期限内及时办理缴费，也可以委托银行或者金额机构代扣；同时规定了社保经办机构划缴和告知义务（第十九条）。  （五）关于未按时足额缴费的强制措施  根据社会保险法第六十三条和第八十六条，草案规定了对用人单位未按时足额缴费采取的强制措施：  一是规定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于用人单位欠缴之日起10日内发出限期补缴催告书，催告用人单位履行缴纳社会保险费及滞纳金义务和相关法律后果（第二十条）。  二是规定用人单位逾期仍未补缴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依法查询其存款账户（第二十一条），根据查询情况报所属的社会保险行政部门作出划拨决定（第二十二条），通知开户银行或其他金融机构划拨社会保险费，并将划拨决定书送达用人单位（第二十三条）。  三是规定用人单位账户余额少于应当缴纳的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经办机构应当要求该用人单位以抵押、质押的方式提供担保，签订最长不超过6个月的延期缴费协议以及担保财产抵缴社会保险费的处置方式（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第二十七条、第二十八条、第二十九条）。  四是规定用人单位未足额缴纳社会保险费且未提供担保的，或者担保期满仍未能清偿社会保险费的，社会保险经办机构可以申请人民法院扣押、查封、拍卖其财产，以拍卖所得抵缴社会保险费（第三十条、第三十一条）。  （六）关于法律责任  草案根据社会保险法和《社会保险费征缴暂行条例》规定，增加了法律责任的内容，明确社会保险经办机构及其工作人员失职、渎职的法律责任（第三十二条）、用人单位未按规定办理缴费申报的法律责任（第三十三条）、瞒报工资总额或职工人数的法律责任（第三十四条），以及未按时足额缴费的法律责任（第三十五条）。  此外，我们还统一制定了相关法律文书，作为本规定的附件，以增强统一性和操作性。 |